

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아동의 놀
권리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3 월 12 일

여 수 시 장

2024. 3. 12. 여수시장인

여수시 조례 제2048호

붙임 여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2048호

여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놀이문화”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재미와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활동 전체를 말한다.
 4. “놀이공간”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 - 가.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
 - 나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어린이공원
 - 다. 그 밖에 어린이의 놀이를 위해 기구를 설치한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장소
- 제3조 중 “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 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제3조(시장의 책무)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(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놀이문화”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재미와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활동 전체를 말한다.</p> <p>4. “놀이공간”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나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2호나 목의 어린이공원 다. 그 밖에 어린이의 놀이를 위해 기구를 설치한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장소 <p>제3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----- ----- ----- -----.</p>